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17호 2023. 9. 15.(금)

훈 령

장수군 훈령 제619호

장수군 공무원 복무단속 규정 전부개정규정 1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216호

장수군 공무원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5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3-1025호
장수군 공고 제2023-1026호
장수군 공고 제2023-1027호
장수군 공고 제 2023-1034호
장수군 공고 제2023-1044호
장수군 공고 제2023-1045호
장수군 체육맑은물사업소공고제2023-26호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7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전부개정 계획..... 48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8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9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6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3-72호

운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 시행계획 고시 81

회 람								
--------	--	--	--	--	--	--	--	--

장수군 훈령 제619호

장수군 공무원 복무단속 규정 전부개정규정

장수군 공무원 복무단속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9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복무단속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공무원 복무단속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수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점검) 행정지원과장은 본청 및 산하기관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점검관을 따로 지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위반사항 및 처리기준) ① 복무 위반사항과 처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② 상기 처리기준은 복무규율의 위반내용에 따라 그 기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수군 공무원 복무 위반사항 처리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비 고
1. 근무실태 가. 무단결근 나. 무단조퇴, 외출 등 이석 다. 출·퇴근 중식시간 미 준수 라. 출장지 무단이탈 - 출장목적외 사적 용무수행 등 마. 기타 복무관련 법령, 지침등 위반사항	가. 위반사항에 따라 훈계 및 징계등 처리 나. 1회 : 주의, 연2회 : 훈계, 연3회 : 경징계 다. 연2회 : 주의, 연3회 : 훈계 연4회 : 경징계 라. 위반사안에 따라 훈계 및 징계등 처리 마. 위반사안에 따라 훈계 및 징계등 처리	
2. 당직근무 가. 무단 당직근무 불이행 나. 당직근무지 무단이탈 다. 근무시간 미준수 및 교대근무 소홀 라. 기타 당직근무 관련 위반사항	가. 위반사안에 따라 훈계 및 징계등 처리 나. “ 다. 1회 : 주의, 연2회 : 훈계 연3회 : 경징계 라. 위반사안에 따라 훈계 및 징계등 처리	
3.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가. 공문서 위조, 변조, 불법 파기등 나. 직무관련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다. 공과금 횡령, 유용 라. 직무관련 재정상 손실 마. 기타 법령, 지침등에 위반한 사항	가. 위반사안에 따라 훈계 및 징계 등 처리 나. “ 다. “ 라. “ 마.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반영하여 규정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정함 (제1조)
- 적용범위 및 점검방법을 정함 (제2조~제3조)
- 위반사항 및 처리기준을 정함 (제4조 및 별표)

장수군 규칙 제1216호

장수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행정지원과장, 재
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당연직 위원: <u>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u></p> <p>2.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u>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 행정조직에 맞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장수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위원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제6조)
 -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

장수군 공고 제 2023-1025호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장 수 군 수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자치법규명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 한우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관리 및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부터 안 제6조)
- 마.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리 및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
- 바. 그 밖에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

4. 금후계획

- 조례안 입법예고 : 2023. 9. 4. ~ 2023. 9. 24.(20일간)
-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10월 중
- 장수군의회 조례 상정 및 의결 : 2023. 11월 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3. 11월 중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축산과
(전화 : 063. 350-2407, FAX : 063. 350-5715, 전자우편 : kcw3696@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나 가능함

6. 기타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 김찬욱 (전화 : 063-350-24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 한우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통해 장수군 한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한우”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수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군을 최종 권리자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한다.
3.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수한우 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장수한우를 이용한 가

공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유통주체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제4조(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품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권의 신청) ① 제3조에 부합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면 군수는 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보내 심의하도록 한다.

③ 증명표장 사용신청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절차, 신청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권의 사용 승인)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표장 사용을 승인 통지한다.

②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조(사용책임) ① 증명표장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명성·품질·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명성 그밖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명표장 사용자에게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 관리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품질관리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③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④ 증명표장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증명표장 위탁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증명표장 업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증명표장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군수는 증명표장 사용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열어 증명표장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품의 명성·품질·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승인품목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지리적 표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경우
4. 사용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5.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타 제품을 유통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유인된 증명표장을 폐기·말소하여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증명표장의 사용이 금지되며, 군에서 시행하는 관련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조치한다.

⑤ 사용 승인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청문)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

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증명표장의 품질 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가치 증대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및 행사 참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
2. 지리적 표시품의 상품화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 보존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포장 부자재 지원
4. 지리적 표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물품,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및 활동경비 지원
5.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23-1026호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장 수 군 수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자치법규명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부터 안 제6조)
- 다.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신청 및 심사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부터 안 제9조)
- 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

4. 금후계획

-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23. 9. 4. ~ 2023. 9. 24.(20일간)
-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10월 중
-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23. 11월 중

5.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축산과
(전화 : 063. 350-2407, FAX : 063. 350-5715, 전자우편 : kcw3696@korea.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나 가능함

6. 기타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 김찬욱

(전화 : 063-350-24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붙임 2】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우 및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

한 전문인력으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증명표장 업무 관련 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승인의 가·부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증명표장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증명표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②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①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군수로부터 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결과 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하 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

②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통지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증명표장 사용권의 적용범위) 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을 유통하는 유통주체가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권은 지리적 표시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유통주체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책임을 다한다.

② 지리적 표시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증명표장 사용권의 적용범위를 본인에 한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증명표장의 표시 및 사용방법) ① 장수한우의 등록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2과 같다.

② 증명표장의 표식은 군에서 출원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건본은 별표 3과 같다.

③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 등) ① 장수한우의 품질·명성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하여 증명표장 사용자는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상시인력 고용을 통해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

1. 전문가는 군수가 위촉하며, 재직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시인력 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

③ 품질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출석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린다.

제13조(위탁 관리) ① 위탁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명표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적 제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매 다음해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중지 신고) 증명표장 사용자가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권의 유효기간) ① 증명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 및 제조·유통과정 중의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3년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원이 검토·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 심사 기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비고
가. 사업영위능력(20)	2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1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 ~ 5년 미만	
	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	20	연간 출하두수 1,000두 이상	
	15	연간 출하두수 500두 이상 ~ 1,000두 미만	
	10	연간 출하두수 500두 미만	
다. 대외신용도(20)	20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15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10	대외신용도가 보통	
라. 판매망 확보(20)	2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15	판매처 일부 확보	
	10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	20	도축장 및 가공장 HACCP 운영	
	15	도축장 또는 가공장 HACCP 운영	
	10	HACCP 미운영	
계(100)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적합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10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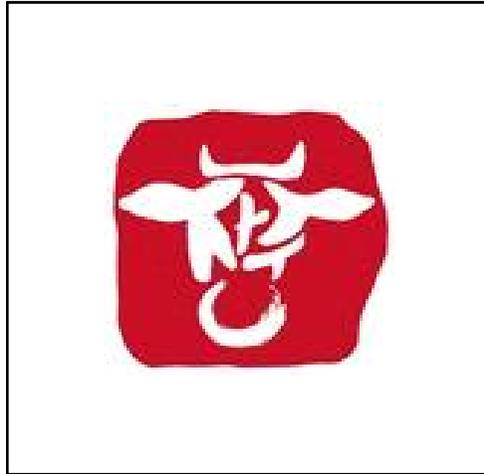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식】



장수한우

[별표 3]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



[별표 4]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 관리기준

1. 품질기준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기준은 전라북도 장수군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로 도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고시 기준 육질 1등급 이상으로 한다.
- 등외판정된 상품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에 해당될 수 없다.
 -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2. 포장 기준

- 유통과정에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 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생 및 청결에 문제가 없는 다양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포장단위는 100g~100kg까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또는 시장유통 여건에 따라 포장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장수한우 생산자가 한우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혈통등록, 사료 및 사양관리를 최대한 통일 시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장수한우의 위생·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축·가공·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 및 법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정 사육밀도 확보를 통한 사육환경의 쾌적성 유지
 2. 동물의약품의 휴약기간 준수 등 약품의 안전사용
 3. 철저한 방역
 4. 장수한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기록 관리
 5. 냉장유통체계에 의한 수송과 보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	단체(업체)명		구성원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장수한우 출하계획	참여농가수		참여농가 사육두수		
	평균 출하 개월령(개월)		출하량(두/년)		
장수한우 도축 및 가공 계획	주 도축장				
	도축두수(년)				
	주 가공장				
	가공두수(년)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품 목	출하량(톤)	포장단위	포장사용매수	주출하처(판매처)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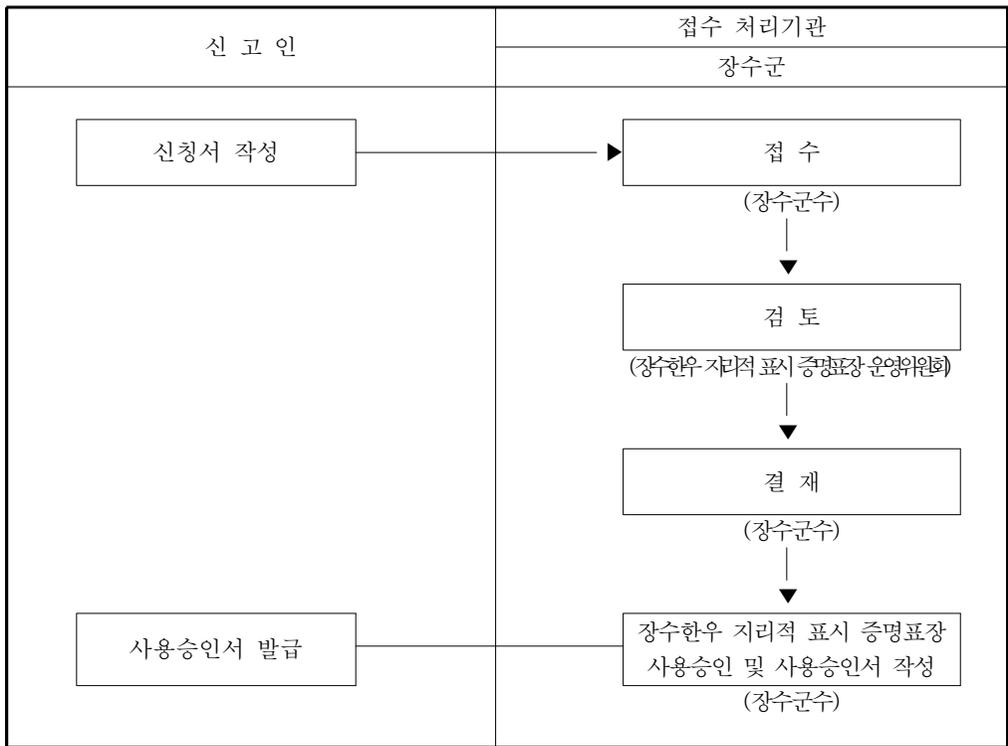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뒤 쪽)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	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 승인번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 신청서

신청인	단체(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승인현황	승인번호	
	승인기간	
사용중지신청	중지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유	
<p>「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성명 (인)</p> <p>장수군수 귀하</p>		

[별지 제9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신청인	단체(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승인현황	승인번호	
	승인기간	
연장신청	연장신청기간 ※ 최대 3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

장수군 공고 제2023-1027호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6일

장 수 군 수

1. 개정사유

- 가.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내 일부 조문 정비
- 나.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 2조, 제12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

- 나.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금후 계획 :

- 조례안 입법 예고 : 2023. 09.
- 조례안 종합검토(입법 예고 의견 제출사항 등 반영) : 2023. 09.
-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23. 10.
- 조례안 의회 상정 및 심의 : 2023. 10.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3. 11.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건설교통과 농촌시설팀
- 2) 팩 스 : 063-350-2593
- 3) 전자우편 : gj3517976@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농촌시설팀(063-350-25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2023-1027호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3조 제1항”을 “법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농어촌정비법</u> 」 제1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농업생산기반시설</u> ”이라 함은 <u>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u>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u>농어촌정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2.·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법 제43조 제1항</u>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 <u>법 제126조제1항</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 ③ (생략)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u>법</u> <u>제43조 제4항 및 제5항</u>의 규정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 <u>법</u> <u>제126조제4항 및 제5항</u>----- -----.</p>
---	---

장수군 공고 제 2023-1034호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전부개정 계획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장수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무원 대상 연말 포상내용을 현행화하고, 1992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민주봉사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표창의 목적, 종류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 나. 표창 절차, 시기, 인원, 방법, 우대사항 등 (안 제5조~제7조)
- 다. 모범공무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수군 포상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결과

4. 따로붙임

- 가.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나. 관계법령 발췌서

5. 의견제출

-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56, FAX : 063-350-5705)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육근홍 (전화 : 063-350-21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표창 중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봉사상) 민주봉사상은 친절 봉사정신과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귀감이 되는 20년 이상 근속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장수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 및 제3조의 표창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은 「장수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

5일전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은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1회 12월말에 시행하고, 민주봉사상은 1명, 모범공무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방법) 표창은 조례 제8조에 의하며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장수군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금 원
지급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12개월간)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참고사항>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제정 1974.12.16 규칙제0196호

개정 1980.01.15 규칙제0304호

1983.12.27 규칙제0377호

1999.04.22 규칙제0797호

(일부개정) 2008.03.19 규칙제093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04.22 규칙0797>

- 1. 새마을사업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 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은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②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 22

규칙0797>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①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377, 1999.04.22 규칙0797>

③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15 규칙제0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30.12.27 규칙제0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22 규칙제0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19. 규칙제0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3 - 1044호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법령 기준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 및 신설(안 제8조제1항제5호, 7호)
- 나.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문구 및 관련 조문 변경(안 제24조 제3항 제11호, 제24조제4항2호)
- 다.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삭제(안 제28조의2)
- 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 관련 조문 변경(안 제41조)
- 마.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안 제44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3. ~ 2023. 10. 02.(20일간)

5. 관계법령 발췌서: 불임

6. 그 밖의 참고사항: 불임

○ 현행 조례 (전문)

7. 의견제출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0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기관 : 장수군청(민원과 건축팀)

- 1) 주 소 : 우)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2) 전화번호 : 063-350-2287, 팩스 063-350-571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별지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10층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제24조제3항제11호 중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을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으로 한다.

제24조제4항2호 중 “이 조례 제25조제3항”을 “이 조례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을 “법 제77조의15제3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4.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규칙 제43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호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삭제>
<신설>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

<p>제24조 (가설건축물)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10. (생 략) 11. <u>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u>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p>	<p>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10층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제24조 (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u> ④ ----- -----</p>
---	--

<p>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 -----.</p>
<p>1.(생략)</p> <p>2. <u>이 조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u></p> <p>제28조의2 (<u>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u>) ① ~ ⑤</p>	<p>1.(현행과 같음)</p> <p>2. <u>이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u></p> <p><삭제></p>
<p>제41조 (결합건축) <u>법 제77조의14 제1항</u>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제41조 (결합건축) <u>법 제77조의15 제3항</u> ----- -----.</p>
<p><신설></p>	<p>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

<p>제44조 (생 략)</p>	<p>원 및 정보제공</p> <p>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군수는 규칙 제43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호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p> <p>제45조 (현행 제44조와 같음)</p>
-------------------	---

【관련법령】

건축물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삭제 <2020. 4. 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2022. 6. 10.>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1. 시·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7. 4. 18.]

장수군 공고 제2023 - 1045호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정비하고 조례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4호서식)

3. 개정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3. ~ 2023. 10. 02.(20일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현행 조례 (전문)

7. 의견제출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0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기관 : 장수군청(민원과 건축팀)

- 1) 주 소 : 우)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2) 전화번호 : 063-350-2287, 팩스 063-350-571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별지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 변경 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대상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p>「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 공동주택관리 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장수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p>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서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서 및 대표자신청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 변경 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대상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p>「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장수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p>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서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3.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증명서 사본 1부			
※ 피 신청인 신상정보는 필수 작성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임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임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4조(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장수군 체육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3-26호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제4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2023년 이후 향후 5년간 국고 지원에 차질이 없이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금후 계획 :

- 조례안 입법예고 : 2023. 09.
- 조례안 종합검토(입법예고 의견제출사항 등 반영) : 2023. 0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10.
- 조례안 의회 상정 및 심의 : 2023. 10.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3. 10.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체육맑은물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8,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체육맑은물사업소
- 2) 팩 스 : 063-350-5725
- 3) 전자우편 : bumjin238@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체육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63-350-2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나.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장수군 고시 제2023-72호

운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 시행계획 고시

운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4일

장 수 군 수

- 1. 사업명칭 : 운곡 마을만들기사업(자율)
- 2.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3. 사업위치 :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운곡마을 일원
- 4. 사 업 비 : 500백만원(군비 500)
- 5.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2년간)
- 6. 주요사업내용
 - 기 초 생 활 기 반 : 야외화장실 정비, 방치시설물 철거
 - 지 역 경 관 개 선 : 담장 신축
 - 지 역 역 량 강 화 : 문화복지프로그램, 국내 선진지 견학, 마을장기발전 계획 수립
- 7. 사업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 8.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수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063-350-238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